

# 순천대학교 교육과정위원회규정

제정	1982. 8. 1.	개정	1992. 7. 28.
개정	2013. 5. 7.	개정	2014. 4. 29.
개정	2015. 1. 7.	개정	2018. 3. 30.
전부개정	2019. 2. 1.	개정	2020. 2. 27.
개정	2020. 8. 19.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순천대학교 학칙 제43조에 따라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순천대학교 교육과정위원회, 교양교육과정위원회, 단과대학 교육과정위원회, 학과·학부(전공) 교육과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순천대학교 교육과정위원회는 교무처장, 교육혁신본부장, 교무부처장, 교무과장, 학사지원과장 및 단과대학장의 추천 등 총장이 임명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된다.(개정 2020. 2. 27., 개정 2020. 8. 19.)

② 단과대학 교육과정위원회는 각 단과대학의 학장과 소속 학과(부)장 또는 전공주임 교수의 추천으로 단과대학장이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되 1인 이상의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며, 위원장은 학장이 된다. (개정 2020. 2. 27.)

③ 교양교육과정위원회는 교육혁신본부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교양교육원장, 비교과 교육센터장, 교육질관리센터장, 교수학습개발센터장 및 단과대학장의 추천 등 총장이 임명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13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육혁신본부장이 된다. (개정 2020. 2. 27., 개정 2020. 8. 19.)

④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각 위원회의 위원장 유고 시 의장은 호선한다.

**제3조(기능)** 각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 1. 순천대학교 교육과정위원회

- 가. 대학의 교육목표, 인재상 등에 따른 교육과정 편성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나.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 다. 교육과정 운영 성과 평가 및 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

- 라. 그 밖에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2. 교양교육과정위원회
  - 가. 교양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 나. 그 밖에 교양교육과정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3. 단과대학 교육과정위원회
  - 가. 단과대학 교육목표 및 핵심역량에 관한 사항
  - 나. 각 학과·부(전공)의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 다. 그 밖에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4. 학과·학부(전공) 교육과정위원회
  - 가. 학과 교육목표 및 핵심역량에 관한 사항
  - 나. 그 밖에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학과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보고)** 단과대학 교육과정위원회 및 교양교육과정위원회 심의결과는 순천대학교 교육과정위원회에, 순천대학교 교육과정위원회 심의결과는 총장에게 보고한다.

**제6조(교육과정 분석 및 환류 등)** ① 교육과정위원회는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약간 명의 연구위원과 교육과정컨설팅단 및 학생컨설팅단, 외부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위원과 교육과정컨설팅단 및 학생컨설팅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연구위원과 교육과정컨설팅단은 매년도 사회 여건 변화와 학생 요구 분석 등을 통해 교육과정 운영 및 개선보고서를 제출한다.

④ 교육과정 질 관리를 위하여 요구조사 및 분석, 교육과정 개편과 운영, 성과평가, 교육과정 개선 등을 별도의 기구를 통하여 실시한다.

**제7조(간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부 칙<2019. 2. 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2. 27.> (순천대학교 학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생략)

제3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 순천대학교 교육과정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중 “교양융합대학장” 및 “교양융합대학은 제외”를 삭제하고, 교양교육과정위원회는 “교양융합대학운영규정 제6조에 따라 두는 교양융합대학운영위원회”를 “교육혁신본부운영규정에 따라 두는 교육혁신본부운영위원회”로 한다.

④부터 ⑧까지 생략

부 칙<2020. 8. 1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